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39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안 제6조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2. 21.

다. 회 부 일 : 2025.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및 노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양질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들은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음.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짐.

이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등).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안 제6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공지능의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제5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u>안전성 확보</u>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 ----- <u>안전성·접근성 확보</u>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신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

현행	개정안
	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 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¹⁾은 일반 국민 대비 76.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2021~2023년 정보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평균
2021	81.7	69.1	95.4	78.1	75.4
2022	82.2	69.9	95.6	78.9	76.2
2023	82.8	70.7	96.1	79.5	76.9

주1: 표의 수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말함

주2: 정보취약계층 평균은 각 계층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평균임

1)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PC 이용 능력,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을 종합한 것임

- 또한,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 전 분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임.
-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의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청소년 등의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이용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 다만 최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제정된 「디지털포용법」(2024.12.26. 본회의 의결, 2026.1.22. 시행)을 통해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디지털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²⁾,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보도 디지털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동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기본계획에는 디지털취약계층³⁾의 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⁴⁾.

2)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또한,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4)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표준화·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 5)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조사·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 포용법」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등의 접근성 보장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전반에 필요한 것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 법률인 「디지털포용법」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